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231호 2017. 1. 5(목)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4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34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1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른 대형 폐기물 품목조정 및 수수료 인상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대형폐기물 품목조정 및 수수료 인상에 따른 별표 개정(별표1)
- 일반용봉투의 무료 공급 관련 조항 개정(안 제15조 제2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삼곡동) / ☎ 032-560-4553, FAX 032-560-276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개 정 안 : “별지 참조”
-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참조”
-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관계 법령 발취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른 대형 폐기물 품목조정 및 수수료 인상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

3. 주요내용

- 대형폐기물 품목조정 및 수수료 인상에 따른 별표 개정(별표1)
- 일반용봉투의 무료 공급 관련 조항 개정(안 제15조 제2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하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하 함은 법 제2조제3호”를 “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로, “영 제2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하 함은”을 “이란”으로, “법 제2조제3항”을 “법 제2조제3호”로, “스티로폼 등”을 “스티로폼 등”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중”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이하 함은”을 “이란”으로, “냉난방류 등으로 제13조의 규정”을 “냉·난방류 등으로 제13조”로, “폐기물로서”를 “폐기물으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하 함은”을 “이란”으로, “공사·작업등”을 “공사·작업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이하 함은”을 “이란”으로, “등에 의하여”를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이하 함은 생활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에 따른”을 “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7조에 따라”로, “구청장이 정하는”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으로, “폐기물로서”를 “폐기물으로써”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이하 함은”을 “이란”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제외 지역”으로, “적환장등을 이용 보관하였”을 “적환장 등에 이용·보관하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관할구역 안”을 각각 “관할 구역”으로, 같은 항 중 “이적”을 “이적(移積)”로, “설치하게 할”을 “설치하게 할”로, “성상,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을 “성질과 상태, 교통장애 여부, 도시 미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당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간”을 “지방자치단체 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위락지등”을 “위락지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량을”을 “양을”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각호의 방법으로 당해”를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묶은후”를 “묶은 후”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배출시”를 “배출 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규격봉투외”를 “규격봉투 외”로, “위치등”을 “위치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면”을 “앞면”으로, “구”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후단 중 “처리절차·방법등”을 “처리절차·방법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수거일·배출장소·배출시간·배출용기·품목별배출요령등”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시간·배출용기·품목별배출요령 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배출자로 하여금 제7조의 규정”을 “배출자에게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범위내에서”를 각각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제9조의2제1항”으로, “날로부터 7일이내”를 “날부터 7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상시”를 “인상 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을 “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을 “제작할 때는 봉투 앞면”으로, “의거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이상”을 “따라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으로, “기타 불편사항 신고처등”을 “그 밖의 불편사항 신고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처벌규정등”을 “처벌규정 등”으로, “완료후”를 “완료 후”로, “회수·보관하는등”을 “회수·보관하는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광고등을 게재하여 수익사업등”을 “광고 등을 게재하여 수익사업 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유선신청에 의하되”를 “유선 신청에 따르되”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을 각각 “제1항제3호”로, 같은 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상점등”을 “상점 등”으로, “당해장소”를 “해당 장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해수욕장, 등산로등”을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으로, “장소로서”를 “장소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를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써”로, “당해”를 “해당”으로, “1톤이상”을 “1톤 이상”으로, “홍보등”을 “홍보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출입구로서”를 “출입구로써”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는”을 “자에게”로, “제공등 제13조의 규정”을 “제공 등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천재지변을 당하여”를 “천재지변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수수료의 감면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단서 중 “서구로”를 “구로”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6조의2 본문 중 “50%”를 “50퍼센트”로 한다.

제17조 중 “법 시행령 제34조의4”를 “영 제38조의4”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등)”을 “(업무의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로, “관리.운영을 위탁할수”를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형폐기물 수수료(제2조, 제13조 관련)

품명	규격	수수료(원)
전기장판	모든규격	6,000
옥돌자석매트(자석요)	모든규격	11,000
장롱	1쪽(4자)1.2m이상	11,000
	1쪽(3자)0.9~1.2m	10,000
	1쪽3자0.9m미만	8,000
책상	양수(양서랍)	7,000
	편수(외서랍, 무서랍)	6,000
	컴퓨터책상	5,000
	상판	3,000
의자	모든규격	4,000
식탁	6인용이상(의자별도)	7,000
	6인용미만(의자별도)	6,000
쇼파	4인용이상	11,000
	3인용	10,000
	2인용	6,000
	1인용	5,000
	테이블	3,000
매트리스 (침대)	2인용	9,000
	1인용	8,000
	유아용침대	3,000
침대틀	2인용(퀵사이즈포함)	4,000
	1인용	3,000
	돌침대(돌포함)	12,000
	유아용침대	5,000
침대머리	모든규격	3,000
서랍장	5단이상(3단양수포함)	8,000
	5단미만	6,000
수납장	다용도수납장	4,000
싱크대(싱크대찬장포함)	대(1m이상)	6,000
	대(1m미만)	4,000
신발장	대(1.5m이상)	6,000
	소(1.5m미만)	3,000
문갑(거실장)	모든규격	6,000
장식장(차단스)	대	8,000

	중	6,000
	소	4,000
책장(책꽂이)	대(3단이상)	6,000
	소(3단이하)	5,000
협탁	모든규격	2,000
TV/오디오 받침대	모든규격	3,000
탁자	10인용이상	9,000
	10인용미만	5,000
밥상	대(1.2m이상), 4인용이상	4,000
	대(1.2m이하), 4인용미만	3,000
피아노	대형(그랜드)	12,000
	일반(얼라이트)	11,000
오르간	모든규격	6,000
스탠드벽시계	일반	5,000
재봉틀	대	5,000
	소	3,000
빨래건조대, 행거(옷걸이)	모든규격	3,000
카펫트	대(길이2.5m이상)	12,000
	중(길이2.5m미만)	7,000
	소(길이1.5m미만)	5,000
액자	대(대각선 1m초과)	5,000
	중(대각선0.5~1.5m)	3,000
	소(대각선0.5m미만)	2,000
쌀통	일반	3,000
	다용도	4,000
병풍	모든규격	5,000
문짝	철재	5,000
	목재	4,000
문틀	대	5,000
	소	3,000
장판	5m이상	5,000
	5m미만	4,000
돗자리	모든규격	5,000
거울	전신거울, 대	5,000
	반신거울, 소	2,000

다리미판	모든규격	2,000
자전거	대일반(어른용)	5,000
	소(어린이용)	4,000
항아리(화분)	대(70cm초과)	5,000
	중(70cm미만)	4,000
	소(40cm미만)	3,000
오락기	일반	10,000
자동판매기	대(입식1m이상)	10,000
	소(1m미만)	6,000
세면기	모든규격	5,000
변기	모든규격	5,000
욕조	모든규격	10,000
방충망	대(문)	4,000
	소(창문)	3,000
아이스박스	대(길이1m이상)	5,000
	중(길이1m미만)	3,000
	소(길이50cm미만)	2,000
여행용가방	대(화물용)	5,000
	소(기내용)	3,000
바둑판	대(두꺼운판)	2,000
	소(얇은판)	1,000
유리	식탁및책상유리	3,000
유모차(보행기)	모든규격	3,000
화장대	모든규격	6,000

※ 상기 이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 ----- ----- <u>필요</u>----- ----- ---</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 ----- <u>뜻은</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폐기물" <u>이라 함은</u>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 <u>이라 함은</u>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과 영 제2조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가정사업계 폐기물" <u>이라 함은</u> 가정 또는 법 제2조제3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이란</u> ----- ----- --. 2. ----- <u>이란</u>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3. ----- <u>이란</u> -- ----- <u>법 제2조제3호</u>

에 따른 사업장생활폐기물
 중에서 고무, 피혁, 섬유, 재활
 용 가치가 상실된 스티로폼등
 과 같이 정상적인 처리가 어
 려운 폐기물과 이사, 집수리
 등으로 사업활동과 관계없이
 배출되며 제7조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생활폐기물중 규격봉
 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
 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
 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류 등
으로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
 서 정하는 품목을 말하며, "폐
 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
 이란 별표 10에서 정한 품목
 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 이라 함
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
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

 ----- 스티로폼
등-----

 ----- 제7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

 -----.

4. ----- 이란 -----

 ----- 냉·난방류
등으로 제13조-----

 ----- 폐기물로서 -----

 -----.

5. ----- 이란 --
 ----- 공
사·작업 등-----

다.

6. "건설폐기물" 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8. "적환장" 이라 함은 공중용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이적과 기타 생활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

--.

6. ----- 이란 -----
----- 등으로 -----

-----.

7. ----- 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7조에 따라 --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 폐기물로서 -----
-----.

8. ----- 이란 -----

----- 그 밖의 -----

-----.

제3조(적용범위) ① -----

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제외 지역은 제외한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에서 지역의 주민이 생활폐기물을 적환장등을 이용 보관하였다가 수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경비를 실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이적을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상,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에 따라 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 생활폐기물관리제외 지역-----
----- 적환장 등에 이용·보관하였-----

제4조(폐기물처리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
----- 관할 구역-----

② -----
--- 관할 구역-----
----- 이적(移積)-----
----- 설치하게 할 --
----- 성질과 상태, 교통장애 여부, 도시 미관 -----
-----.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

청장은 제4조제1항의 해당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공한지 및 위락지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6. ~ 8. (생략)

----- 해당 기관-----

② -----

----- 지방자치단체간-----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위락지 등-----

6. ~ 8. (현행과 같음)

9.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의 대행계약 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하며, 대행계약 기준은 실제 수집·운반·처리한 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20:00부터 24:00까지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고,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투입구에 수시로 배출한다. 이때,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가정사업계폐기물 포함)로 배출시 50ℓ:13kg이하, 100ℓ:25kg이하(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ℓ)로 제한한다.

9.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양을 -----
--.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
----- 제2항-----

--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
-----.

1. -----

----- 묶은
후 -----

- 배출 시 -----

-----.

2. 가정사업계폐기물은 규격봉투외에 별도로 지정된 폐기물 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거나 동 주민센터에 배출일시, 장소, 위치등을 신고하여 배출한다.

3. 대형폐기물은 폐기물 전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처리업체에 배출일시, 배출장소, 배출품목 등을 신고한 후 배출하거나 구 홈페이지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한 후 인터넷 배출신고필증을 부착하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제2조제4항에 따른 폐소형 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은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2. ----- 규격봉투 외-----

----- 위치
등-----.

3. ----- 앞면-----

-----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

-----.

4. -----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으며 처리절차·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5.·6.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시간·배출용기·품목별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로 하여금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 처리절차·방법 등-----
-----.

5.·6.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수거
일·배출장소·배출시간·배출
용기·품목별배출요령 등-----
-----.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 배출자에 제7조-----

-----.

② -----

----- 해당
자에게 -----
-----.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4. (생략)

제9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

-----.

제9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

- 범위에서 -----
----- .법
위에서 -----

----- 범위에서

② 제1항-----
-----.

-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9조의2제1항-----

----- 날부터 7
일 이내-----
-----.

② -----

는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① (생략)

② 쓰레기봉투의 색상 및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주민요구 또는 쓰레기봉투의 가격 인상시에는 봉투 또는 봉투인쇄 글씨의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④ (생략)

⑤ 구청장은 가내수공업등 소량의 폐기물 처리 및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용 폐기물봉투를 제작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11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 그
밖에 -----
-----.

제10조(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각 호-----.

- 인상 시-----

-.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법 제2조제
3호-----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의 제작)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별표 10에서 정한 예시에 의거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 구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구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고,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금액, 배출요령, 처리 업체 연락처 기타 불편사항 신고처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0조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의 제작)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작할 때는 봉투 앞면-----
----- 따라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

----- 그 밖의 불편사항 신고처 등-----.

③ -----

----- 처벌규정 등-----
----- 완료 후 -----
----- 회수·보관하는 등 -----

-----.

④ ----- 제2항-----

처리스티커의 제작사양은 각각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단, 자동집하시설에 배출되는 쓰레기 봉투는 인식 스티커를 추가 부착하여 제작한다.(후단신설 2016.3.14, 개정 2016.3.14.)

⑤ (생략)

⑥ 구청장은 쓰레기봉투에 광고 등을 게재하여 수익사업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쓰레기봉투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등의 공급을 위탁받은 자가 봉투판매소 또는 배출자에게 쓰레기봉투등을 공급할 때에는 방문 또는 유선신청에 의하되, 일반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봉투판매소까지, 가정사업계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는

-----.

⑤ (현행과 같음)

⑥ ----- 광고 등을 게재하여 수익사업 등-----
-----.

제12조(쓰레기봉투등의 공급 및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 유선 신청에 따르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출
장소까지 방문 공급함을 원칙으
로 한다.

⑤ (생 략)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생 략)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기준, 쓰
레기봉투가격 및 판매수수료는
별표 7에 따른다.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는 판매가격에서
별표 7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는 지정판
매소에서 판매하는 방법에 의한
다.

제1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
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
해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
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
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

-----.

③ 제1항제3호-----

----- 따
른다.

제1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
--- 각 호-----

----- 상점 등-----
----- 해
당 장소-----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다량의 쓰레기 투입·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적재중량톤 1톤이상인 기계식상차용 롤온박스 및 컨테이너박스 등의 용기(이하 "대형 쓰레기통"이라 한다)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

1. -----
----- 따른 -----

2. -----
----- 따른 -----
----- 따른 -----

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 ----- 장
----- 소로써 -----

② ----- 각 호에 해
----- 당하는 장소로써 -----
----- 해당 -----

----- 1톤 이상 -----

----- 홍보 등 -----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중용 쓰레기통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기관은 등산로·유원지의 출입구로서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역에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 4. (생략)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 제공등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1호는 삭제)

2. ~ 4.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30ℓ 이내로 공급하여야 하며, 필요 시 봉투구입 비용에

-----.

③ -----
----- 각 호-----.

1. -----
-- 출입구로써 -----

-----.

2. ~ 4. (현행과 같음)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 -----

----- 자에게 -----
----- 제공 등 제13조-----

-----.

1. 천재지변에 따른 -----

2. ~ 4. (현행과 같음)

② -----

할 법원에 과태료 재판이 신청된 경우 및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등) 투기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법 시행령 제34조의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한 관련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26조(업무의 위탁등) ① 구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할 수 있는자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로 한다. 다만,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는 제

-----.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영 제38조의4-----

-----.

제26조(업무의 위탁 등) ① -----
-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
----- 효율적인
관리·운영-----
-----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p><u>외한다.</u>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7조(시행규칙) ----- - <u>필요</u>----- -----.</p>
---	---

관계법령 참고자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产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 8의2. "폐자원에너지"란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